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913호 2012. 12. 4(화)

◀ 공 고 ▶

-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27호) 2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제2012-1714호) 7

회 람									
--------	--	--	--	--	--	--	--	--	--

공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7호

공 고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칠 구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공장 및 각종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제5조)

- 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상시 측정 및 저소음 장비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 다.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의 엄격한 기준 설정(안 제9조)
- 라.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인면서 5일 이상 공사하는 도로 굴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부여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마.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탈취제 살포 등의 조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바.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후 이행토록 하고,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음·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음·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소음 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음의 측정방법) ①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저소음 장비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④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에서 소음·먼지·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소음·먼지·악취 저감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2-1714호

공 고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시립예술단원의 급여 동결로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2.0%), 공무원급여 인상률(15.6%),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급여 대비인상 요인(29.1%)을 고려하여 인상하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내년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9.8%)과 3개년도('08, '11, '12)의 공무원급여 인상율(11.1%)의 평균수준인 10퍼센트 정도를 인상하여 시립예술단원의 보수를 현실화 시켜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그 동안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의 급여(본봉 및 수당)를 평균 10퍼센트 정도 인상함.
- 예술단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3. 관련법령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29 ~ 12. 18(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2.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 전화 : 054-270-54870, FAX : 054-270-5490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을 “제5조제1항과 제2항”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호봉으로 한다” 를 “1호봉으로 하고, 초임급여의 호봉은 최초 위촉 시에만 적용하며, 최초 위촉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에 대한 호봉승급은 하지 아니 한다” 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공연발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평가단 중 각 예술단별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에서 별표 11까지 및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 체	정 원	비 고
교향악단 (8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간부) 1명 • 부지휘자(간부) 1명 • 악장 1명 • 단무장 1명 • 수석단원 12명 • 차석단원 12명 • 악기담당 2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48명 	※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합창단 (5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간부) 1명 • 트레이너 1명 • 단무장 1명 • 파트장 4명 • 반주자 2명 • 부파트장 4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41명 	※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연극단 (2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자(간부) 1명 • 조연출 1명 • 단무장 1명 • 수석단원 1명 • 차석단원 1명 • 무대담당 1명 • 분장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16명 	※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별표2]

단원별 직무(제4조제3항 관련)

직 책	직 무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지휘자, 연출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단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지도
악장	지휘자, 부지휘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단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등
수석,부수석 파트장,부파트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장을 보좌하고, 담당 및 단무장과 협조하여 각 담당 파트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반주자	합창단 전체 및 파트별 연습 및 공연을 위한 피아노 반주 지원
단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담당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 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내 일반 행정처리
총무	지휘자, 연출자 보좌, 복지대행, 식사준비, 각종 제반 광고 등
악보담당	악장 및 수,차석단원, 단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보 준비 및 공연후 악보정리 재사용 방안 강구
악기담당	악장 및 수,차석단원, 단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확보, 악기보관 관리, 운송 수리, 무대설치 및 해체 등을 담당
무대담당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무대 및 소품제작 설치, 음향, 조명, 영상 등의 확보 및 지원, 각종 재료 및 장치 보관관리
분장담당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배우의 의상 및 분장을 지원하며 재료의 확보 및 보관관리 등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간부 및 직책단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원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연에 충실

[별표3]

상 임 단 원 본 봉(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천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비고
정	1,875	18	1,078	
1	661	19	1,092	
2	693	20	1,105	
3	723	21	1,117	
4	753	22	1,128	
5	784	23	1,138	
6	811	24	1,147	
7	839	25	1,156	
8	867	26	1,162	
9	893	27	1,170	
10	918	28	1,175	
11	942	29	1,182	
12	965	30	1,394	
13	987	31	1,527	
14	1,007			
15	1,027			
16	1,045			
17	1,062			

[별표4]

상 임 단 원 예 능 수 당(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천원)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비고	호봉	교향악단	기타단체	비고
정	624	592		18	343	322	
1	200	185		19	350	328	
2	209	194		20	357	335	
3	217	203		21	364	342	
4	226	212		22	370	347	
5	235	221		23	377	354	
6	244	229		24	382	360	
7	253	238		25	389	367	
8	261	247		26	396	372	
9	270	256		27	402	379	
10	279	264		28	408	386	
11	288	271		29	414	392	
12	297	279		30	422	396	
13	304	287		31	426	401	
14	312	294					
15	320	302					
16	327	310					
17	335	316					

[별표5]

직 책 수 당(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직 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 연출자	220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	160
	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	110
	차석단원, 악보담당	90

[별표6]

상임단원 공연수당(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수당지급액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40/1회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 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별표7]

상임단원 복리후생비(제5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130	매월

[별표8]

비상임단원 겸임수당(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부지휘자 약장, 조연출	수석단원, 반주자	차석단원
교향악단	1,400	1,200	1,000
기타단체	1,300	1,100	900

[별표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560	-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별표10]

비상임단원 예능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30	매월

[별표11]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당지급액	비 고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	160/월 (40/1회당)	- 1인당 월 4회까지, 공연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 내 연속공연 시 1회로 간주 - 연극단원은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간주

[별표13]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

단체별	부지휘자, 악장, 조연출	지급시기		
교향악단	800	매월		
합 창 단	600			
연극단	일반운영비	400	공연을 위해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무대제작 특별운영비	소공연장		1,300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2,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호봉조정) ① (생략)</p> <p>②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급여는 31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연극단의 조연출의 급여는 29호봉으로 각 예술단의 단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고정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대학졸업 이상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2호봉으로, 그 밖의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신설〉</p>	<p>제9조(호봉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제5조제1항과 제2항----- -----</p> <p>③ ----- ----- ----- -----하고, 초 임급여의 호봉은 최초 위촉 시에만 적용하며, 최초 위촉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에 대한 호봉승급은 하 지 아니한다.</p> <p>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 장은 각 예술단의 공연발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평가단 중 각 예술단별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 며,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제1호관련)			[별표1]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 체	정 원	비 고	단 체	정 원	비 고	
교향악단 (80인)	• 지휘자(간부)	1인	교향악단 (80명)	• 지휘자(간부)	1명	※ 단원은 상임 ·비상임 단원을 포함
	• 부지휘자(간부)	1인		• 부지휘자(간부)	1명	
	• 악장	1인		• 악장	1명	
	• 단무장	1인		• 단무장	1명	
	• 수석단원	12인		• 수석단원	12명	
	• 차석단원	12인		• 차석단원	12명	
	• 악기담당	2인		• 악기담당	2명	
	• 악보담당	1인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인	• 총 무	1명			
• 단 원	48인	• 단 원	48명			
합창단 (56인)	• 지휘자(간부)	1인	합창단 (56명)	• 지휘자(간부)	1명	※ 단원은 상임 ·비상임 단원을 포함 ※ <삭제>
	• 트레이너	1인		• 트레이너	1명	
	• 단무장	1인		• 단무장	1명	
	• 파트장	4인		• 파트장	4명	
	• 반주자	1인		• 반주자	2명	
	• 부파트장	4인		• 부파트장	4명	
	• 악보담당	1인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인		• 총 무	1명	
• 단 원	42인	• 단 원	41명			
연극단 (24인)	• 연출자(간부)	1인	연극단 (24명)	• 연출자(간부)	1명	※ 단원은 상임 ·비상임 단원을 포함
	• 조연출	1인		• 조연출	1명	
	• 단무장	1인		• 단무장	1명	
	• 수석단원	1인		• 수석단원	1명	
	• 차석단원	1인		• 차석단원	1명	
	• 무대담당	1인		• 무대담당	1명	
	• 분장담당	1인		• 분장담당	1명	
	• 총 무	1인		• 총 무	1명	
• 단 원	16인	• 단 원	16명			

현행		개정안	
[별표2] 단원별 직무(제4조제3항관련)		[별표2] 단원별 직무(제4조제3항 관련)	
직책	직무	직책	직무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생략)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	(현행과 같음)
악장	(생략)	악장	(현행과 같음)
수석, 부수석 파트장, 부파트장	(생략)	수석, 부수석 파트장, 부파트장	(현행과 같음)
반주자	(생략)	반주자	(현행과 같음)
단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기획홍보담당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 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체 일반 행정 처리	단무장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담당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 섭외·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체 일반 행정 처리
총무	(생략)	총무	(현행과 같음)
악보담당	(생략)	악보담당	(현행과 같음)
악기담당	(생략)	악기담당	(현행과 같음)
무대담당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무대 및 소품 제작 설치, 음향, 영상 등의 확보 및 지원, 각종재료 및 장치 보관관리 등	무대담당	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무대 및 소품 제작 설치, 음향, 조명, 영상 등의 확보 및 지원, 각종재료 및 장치 보관관리 등
분장담당	(생략)	분장담당	(현행과 같음)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생략)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상임단원 본봉(제5조제1호관련) (단위:천원)				[별표3] 상임단원 본봉(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천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호봉	예술단원
정	<u>1,705</u>	18	<u>980</u>	정	<u>1,875</u>	18	<u>1,078</u>
1	<u>601</u>	19	<u>993</u>	1	<u>661</u>	19	<u>1,092</u>
2	<u>630</u>	20	<u>1,005</u>	2	<u>693</u>	20	<u>1,105</u>
3	<u>658</u>	21	<u>1,016</u>	3	<u>723</u>	21	<u>1,117</u>
4	<u>685</u>	22	<u>1,026</u>	4	<u>753</u>	22	<u>1,128</u>
5	<u>713</u>	23	<u>1,035</u>	5	<u>784</u>	23	<u>1,138</u>
6	<u>738</u>	24	<u>1,043</u>	6	<u>811</u>	24	<u>1,147</u>
7	<u>763</u>	25	<u>1,051</u>	7	<u>839</u>	25	<u>1,156</u>
8	<u>789</u>	26	<u>1,057</u>	8	<u>867</u>	26	<u>1,162</u>
9	<u>812</u>	27	<u>1,064</u>	9	<u>893</u>	27	<u>1,170</u>
10	<u>835</u>	28	<u>1,069</u>	10	<u>918</u>	28	<u>1,175</u>
11	<u>857</u>	29	<u>1,075</u>	11	<u>942</u>	29	<u>1,182</u>
12	<u>878</u>	30	<u>1,268</u>	12	<u>965</u>	30	<u>1,394</u>
13	<u>898</u>	31	<u>1,389</u>	13	<u>987</u>	31	<u>1,527</u>
14	<u>916</u>			14	<u>1,007</u>		
15	<u>934</u>			15	<u>1,027</u>		
16	<u>950</u>			16	<u>1,045</u>		
17	<u>966</u>			17	<u>1,062</u>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상임단원 예능수당(제5조제2호관련) (단위:천원)						[별표4] 상임단원 예능수당(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천원)					
호봉	교향 악단	기타 단체	호봉	교향 악단	기타 단체	호봉	교향 악단	기타 단체	호봉	교향 악단	기타 단체
정	568	539	18	312	293	정	624	592	18	343	322
1	182	169	19	319	299	1	200	185	19	350	328
2	190	177	20	325	305	2	209	194	20	357	335
3	198	185	21	331	311	3	217	203	21	364	342
4	206	193	22	337	316	4	226	212	22	370	347
5	214	201	23	343	322	5	235	221	23	377	354
6	222	209	24	348	328	6	244	229	24	382	360
7	230	217	25	354	334	7	253	238	25	389	367
8	238	225	26	360	339	8	261	247	26	396	372
9	246	233	27	366	345	9	270	256	27	402	379
10	254	240	28	371	351	10	279	264	28	408	386
11	262	247	29	377	357	11	288	271	29	414	392
12	270	254	30	384	360	12	297	279	30	422	396
13	277	261	31	388	365	13	304	287	31	426	401
14	284	268				14	312	294			
15	291	275				15	320	302			
16	298	282				16	327	310			
17	305	288				17	335	316			

현행	개정안																								
<p>[별표5] 직책수당(제5조제3호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체별</th> <th style="width: 55%;">직책</th> <th style="width: 30%;">수당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연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석단원, 악보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80</u></td> </tr> </tbody> </table>	단체별	직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연출자	<u>200</u>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	<u>150</u>	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	<u>100</u>	차석단원, 악보담당	<u>80</u>	<p>[별표5] 직책수당(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체별</th> <th style="width: 55%;">직책</th> <th style="width: 30%;">수당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연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22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석단원, 악보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90</u></td> </tr> </tbody> </table>	단체별	직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연출자	<u>220</u>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	<u>160</u>	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	<u>110</u>	차석단원, 악보담당	<u>90</u>
단체별	직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연출자	<u>200</u>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	<u>150</u>																							
	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	<u>100</u>																							
	차석단원, 악보담당	<u>80</u>																							
단체별	직책	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지휘자,연출자	<u>220</u>																							
	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악기담당	<u>160</u>																							
	수석단원, 반주자, 단무장, 무대담당, 분장담당, 총무	<u>110</u>																							
	차석단원, 악보담당	<u>90</u>																							
<p>[별표6] 상임단원 공연수당(제5조제4호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체별</th> <th style="width: 15%;">수당지급액</th> <th style="width: 70%;">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u>30/1회당</u></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td> </tr> </tbody> </table>	단체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u>30/1회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p>[별표6] 상임단원 공연수당(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체별</th> <th style="width: 15%;">수당지급액</th> <th style="width: 70%;">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u>40/1회당</u></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td> </tr> </tbody> </table>	단체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u>40/1회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단체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u>30/1회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단체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u>40/1회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3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현행				개정안			
[별표7] 상임단원 복리후생비(제5조제5호관련) (단위:천원)				[별표7] 상임단원 복리후생비(제5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천원)			
구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구분	수당지급액	지급기준	
가계 보조비	120	매월		정액 급식비	130	매월	
[별표8] 비상임단원 겸임수당(제5조제6호관련) (단위:천원)				[별표8] 비상임단원 겸임수당(제5조제2항 관련) (단위:천원)			
단체별	부지휘자 약장, 조연출	수석단원 반주자	차석단원	단체별	부지휘자 약장, 조연출	수석단원 반주자	차석단원
교향악단	1,300	1,100	900	교향악단	1,400	1,200	1,000
기타단체	1,200	1,000	800	기타단체	1,300	1,100	900
[별표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관련) (단위:천원)				[별표9]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천원)			
단체별	수당	비고		구분	수당	지급기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510	-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이 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560	- 주3일 이상 또는 월13일 이 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현 행	개 정 안												
<p>[별표10] 비상임단원 예능수당(제8조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단체별</th> <th style="width: 20%;">수 당</th> <th style="width: 60%;">지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td> </tr> </tbody> </table>	단체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00	매월	<p>[별표10] 비상임단원 예능수당(제8조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수 당</th> <th style="width: 60%;">지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30	매월
단체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00	매월											
구 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30	매월											
<p>[별표11]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8조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단체별</th> <th style="width: 20%;">수 당</th> <th style="width: 60%;">지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td> </tr> </tbody> </table>	단체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150	매월	<p>[별표11]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8조 관련)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수 당</th> <th style="width: 60%;">지 급 시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월 (40/1회당)</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4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내 연속 공연시 1회로 간주 - 연극 단원은 단체 연습을 공연으로 간주 </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당	지 급 시 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160/월 (40/1회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4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내 연속 공연시 1회로 간주 - 연극 단원은 단체 연습을 공연으로 간주
단체별	수 당	지급시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150	매월											
구 분	수 당	지 급 시 기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160/월 (40/1회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4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내 연속 공연시 1회로 간주 - 연극 단원은 단체 연습을 공연으로 간주 											

현행				개정안			
[별표13] 예술단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관련) (단위:천원)				[별표13] 예술단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천원)			
단체별		부지휘자, 악장, 조연출		단체별		부지휘자, 악장, 조연출	
교향악단		700		교향악단		800	
합창단		500		합창단		600	
연극단	일반 운영비	300		연극단	일반 운영비	400	
	무대 제작 특별 운영비	소공연장	1,200		무대 제작 특별 운영비	소공연장	1,300
		<신설>	>			중공연장	1,600
		대공연장	1,800			대공연장	2,000
공연을 위해 무대 제작이 있는 달/1회(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 수당 성격)				공연을 위해 무대 제작이 있는 달/1회(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 수당 성격)			

기 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공 표 일 : 2012년 11월 29일
- 검 사 일 : 2012년 11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정수과
- 검사대상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32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7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 전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구 분	유 강	공 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고
(상수원)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임하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IV (약간나쁨)		III (보통)	I b (좋음)	I a (매우좋음)	III (보통)	III (보통)	I b (좋음)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임

<< 학야정수장 수질검사결과 >>

- 검 사 일 : 2012년 10월 중
- 검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검사결과 :
 - 정수장 1개소 및 수도꼭지 2개소(천북2, 신광면) : 기준적합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1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1. 29.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11월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안개염수		임하염수	형상강	복류수	진전지	늪대지수	국강천	(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여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원)기예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염양유기물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24	0.15	0.22	0.26	0.24	불검출	0.18	0.25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2.2	1.2	1.4	2.2	2.2	0.6	1.3	2.6	1.4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6	0.02	0.04	0.06	0.05	0.01	0.03	0.04	0.01	
	건강상유해염양유기물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진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론(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유리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73	0.73	0.97	0.43	0.52	0.36	0.73	0.54	0.95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35	0.045	0.062	0.052	0.025	0.032	0.033	0.036	0.050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16	0.035	0.048	0.022	0.009	0.021	0.016	0.020	0.038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3	0.010	0.014	0.019	0.010	0.009	0.012	0.010	0.010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6	불검출	불검출	0.011	0.006	0.002	0.005	0.006	0.002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북류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북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7	54	70	116	114	32	64	124	45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3.1	3.9	3.0	3.3	2.6	2.3	2.8	2.3	3.5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6.8	7.3	7.4	7.0	6.9	7.5	7.4	7.5	7.0
	45.아연(Zn)	3mg/ℓ이하	0.005	0.003	불검출	0.002	0.004	0.002	0.004	0.115	0.004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5	10	13	35	34	11	26	17	13
	47.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61	135	156	279	281	123	197	269	76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12	0.10	0.09	0.14	0.07	0.09	0.10	0.13	0.05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58	13	22	60	58	11	34	72	13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4	불검출	0.02	0.06	0.04	0.002	0.02	0.02	0.04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출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병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전류염소	4.0mg/ℓ이하	0.47	0.73	0.32	0.48	0.56	0.49	0.60	0.49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20	0.005	불검출	0.015	0.011	0.003	0.005	0.106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5	10	14	35	34	11	28	18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